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564
----------	-------

발의연월일 : 2025. 11. 26.

발 의 자 : 이용우 · 박 정 · 박민규
복기왕 · 김태선 · 진선미
김남희 · 김한규 · 김남근
이학영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하도급 대금 지급 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민간부문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하도급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문제는 민간부문에서도 심각한 수준이며, 하도급대금 지급의 투명성 확보 필요성도 공공과 민간을 불문하고 동일하게 요구되는 실정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하도급대금 및 건설근로자 임금의 적정한 지급을 보장하는 한편, 건설근로자 임금지급에 사용되는 전자카드신고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지급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건설공사 중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의 범위를 공공부문의 건설공사에서 50억 원 이상(법 시행 1년차 300억 원 이상, 시행 2년차 100억 원 이상, 3년차 이후 50억 원 이상)의 민간건설공사까지 확대함(안 제34조제9항, 안 제98조의 2 및 부칙 제3조).
- 나. 건설기계 대여에 대해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대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동일하게 확대함(안 제32조제 4항).
- 다. 하수급인에 대한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이 지체되는 등의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동일하게 확대함(안 제35조).
- 라.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하여 지급되는 하도급대금 중 건설근로자의 임금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 4항에 따라 발급·사용되는 전자카드를 이용한 전자카드신고시스템을 연계하여 지급되도록 함(안 제34조제10항).
- 마.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아도 되는 요건과 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아도 되는 요건을 정비함(안 제34조제2항 및 안 제68조의3제2항).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 본문 중 “제34조제1항·제8항 및 제35조”를 “제34조제1항·제8항·제9항 및 제35조”로, “제35조제2항제5호”를 “제34조제9항, 제35조제2항제5호”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만”을 “다만, 제34조제9항의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로, “공사대금”은 “건설기계 대여금”으로 보고”로 한다.

제34조제2항 단서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1건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3. 제9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되는 경우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4조제9항 전단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를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로, “시스템”을 “시스템 등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이하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 ⑩ 제9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되는 경우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카드신고시스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발급·사용되는 전자카드를 이용하여 사업주가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을 연계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 ⑪ 제9항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을 “제34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34조제9항제1호에 따른 “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제35조제2항제6호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을 “제34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34조제9항제1호에 따른 “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제68조의3제2항 중 “경우 등”을 “경우 또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등”으로 한다.

제98조의2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34조제9항을 위반하여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대금 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 제34조, 제35조 및

제6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민간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 등에 관한 특례) 제34조제9항제2호의 “50억 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1.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까지: 300억 원
2.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까지: 100억 원
3. 시행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50억 원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① ~ ③ (생 략)	제32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건설기계 대여업자 및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 품하는 자(이하 “제작납품업자” 라 한다)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 사용하는 기자재를 대여하는 자 (이하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 지급에 관하 여는 <u>제34조제1항·제8항 및 제</u> <u>35조(건설기계대여업자에 대하</u> <u>여는 제35조제2항제6호, 제작납</u> <u>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u> <u>에 대하여는 제35조제2항제5호</u> <u>및 제6호는 제외한다)</u> 를 준용한 다. 이 경우 “발주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 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 자재 대여업자”로, “하도급대	④ ----- ----- ----- ----- ----- ----- ----- ----- ----- ----- ---- <u>제34조제1항·제8항·제9</u> <u>항 및 제35조</u> ----- ----- ----- ----- <u>제34조제9항, 제35조</u> <u>제2항제5호</u> ----- --. ----- ----- ----- ----- ----- -----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
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③ ~ ⑧ (생 략)

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
사는 제외한다)를 도급받은 수
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
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
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
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
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
-----.

1. 1건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
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
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3. 제9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
여 지급되는 경우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 ⑧ (현행과 같음)

⑨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

----- 시
스템 등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
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사대금 청구·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는 바에 따라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이하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이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건

<신 설>

<신 설>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

설공사

⑩ 제9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되는 경우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카드신고시스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발급·사용되는 전자카드를 이용하여 사업주가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을 연계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⑪ 제9항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

-----.

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
 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하수급
 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후단 신설>

③ ~ ⑦ (생략)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
 급보증)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
 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
 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
 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
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
 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
 다.

③ ~ ⑥ (생략)

제98조의2(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

이 경우 제34조제9항제1호에
따른 “소규모공사 등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
다.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
 급보증) ① (현행과 같음)

② -----

 ----- 경
우 또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등 -----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98조의2(과태료) -----

 ---.

1. (생략) <u><신설></u> 2. (생략)	1. (현행과 같음) <u>1의2. 제34조제9항을 위반하여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 지 아니하고 공사대금을 지급 한 자</u> 2. (현행과 같음)
---	--